

2024. 1.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2024 대덕구청 이렇게 달라집니다





목 차



1.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서비스 시행	1
2. 북대전세무서 대덕민원봉사실 운영	2
3.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 확대	3
4. 행복한 100세시대 만들기! 대덕형 마을돌봄사업 강화...	4
5.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확대	5
6.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금액 인상	6
7. 대덕구 가족센터 운영 및 설치 이전	7
8. 첫만남 이용권 지원 강화	8
9.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 지원 강화	9
10.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자 확대	10
11.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금 확대	11
12. 부모급여 확대 지원	12
13.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확대 지원	13
14.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금액 확대	14
15. 대덕구 로컬푸드 직매장 개소	15



목 차



16. 대덕구 공영주차장 신규 조성	16
17. 대덕구 노상주차장 확대 지정 운영	17
18.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시행	18
19.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시행	19
20. 산불소화시설 설치 사업	20
21.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수수료 및 내용 변경	21
2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확대	22
23. 난임부부 지원(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23
24. 영유아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24
25.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25
26.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26
27.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확대	27
28.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28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서비스 시행」

(시행예정일 2024년 1월)

□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 및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받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지에 사용하는 제도

□ 새롭게 바뀌어요!

▷ 기부자의 기부금을 사용할 기금 사업을 직접 선택하여 기부 가능

종 전
• 기부자가 기부할 지자체로 대덕구를 선택하여 기부하면, 기부금은 구에서 선정한 기금 사업에 사용됨



변 경
• 기부자가 고향사랑e음 지정기부 서비스 를 통하여 본인의 기부금을 사용할 기금 사업을 직접 선택하여 기부 가능

사업개요

- **기부주체** : 개인이 주소지 외의 전국 모든 지자체 기부 가능
- **기부금액** : 연 500만 원까지 기부 가능
- **세액공제** : 10만 원 이하 전액 공제, 10만 원 초과 16.5% 공제
- **답례품** : 기부액의 30% 이내 지역 특산품, 관광서비스 등으로 제공
- **기부방법** : **고향사랑e음**(<http://ilovegohyang.go.kr>) 및 농협은행 창구 이용
- **기부금운용** : 별도 기금을 설치하여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공동체 활성화,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 주민복지 증진에 사용

기대효과

- 기부자가 원하는 기금 사업 선택으로 기부자의 의견 반영
- 기부금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으로 구민 복지 증진
- 지역생산 물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문의 | 자치행정과 042-608-6142

「북대전세무서 대덕민원봉사실 운영」

(시행일 2023년 12월)

□ 새롭게 생겨요!

▷ 대덕구민의 납세편의 및 권리증진을 위해 송촌동행정복지센터 1층에서 북대전세무서 「대덕민원봉사실」을 운영합니다.

※ 2023. 12. 4.(월) 개소

【시 설 위 치】



사업개요

- 위 치 : 송촌동행정복지센터 1층 (대덕구 동춘당로94번길 11)
- 처리업무 : 각종 민원증명 발급 및 사업자등록증 관련 업무

- 국세납세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각종 민원증명서 발급
- 사업자등록(신규신청, 변경, 휴폐업) 접수처리 및 발급

※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신고세목 접수는 제외

- 연 락 처 : (전화) 042-624-8233 / (팩스) 042-624-8244

기대효과

- 유성구 죽동에 위치한 북대전세무서 방문 없이 국세 업무처리가 가능하여 원거리 이동에 따른 대덕구민의 불편함을 해소



문의 | 세정과 042-608-6622, 북대전세무서 대덕민원봉사실 042-624-8233

「보훈에 우수당 지급대상 확대」

(시행예정일 2024년 7월)

□ 무엇이 달라지나요?

종 전
• 지급대상 - 독립유공자 유족 - 전몰군경 유족 - 순직군경 유족 - 4·19 및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 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전상군경·공상군경 본인 • 지급액 : 8만 원



변 경
• 지급대상 - 독립유공자 유족 - 전몰군경 유족 - 순직군경 유족 - 4·19 및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 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전상군경·공상군경 본인 -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본인 또는 유족 • 지급액 : 8만 원

알아두면 좋아요

- **자격기준** :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국가보훈처에 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자로 등록된 자
- **지원대상**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독립유공자 유족, 전몰군경 유족, 순직군경 유족, 4·19 및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본인 또는 유족), 특수임무유공자(본인 또는 유족), 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전상군경·공상군경(본인), **순직공무원(유족) · 공상공무원(본인)**
- **지 급 액** : 매월 8만원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신분증, 본인(유족) 명의 통장사본



문의 | 복지정책과 042-608-6763

「행복한 100세시대 만들기! 대덕형 마을돌봄사업 강화」

(시행일 2024년 2월)

□ ‘대덕형 마을돌봄’이란?

- ▷ 지역사회 탄탄한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 등 통합적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 무엇이 달라지나요?

종 전
• 병원·시설에서 돌봄 • 개별 사업 중심 분절적 지원 • 공급자 중심 서비스 제공



변 경
• 평소 살던 곳에서 돌봄 • 사람 중심의 통합 제공 • 이용자 욕구 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

사업개요

- 기 간 : 2024. 2. ~ 12.
- 사업내용 : 이용자 중심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 대표사업

연번	사 업 명	예 산	대 상	내 용
1	5 대 기 본 돌 봄	5.1억 원	노인, 장애인 등 돌봄필요 대상	일시재가, 이동지원, 영양급식, 주거 편의, 단기보호
2	위 생 서 비 스	0.5억 원	거동불편 노인	방문목욕 및 방문이미용
3	주 거 환 경 개 선	0.3억 원	낙상예방 필요 노인	안전바, 미끄럼방지매트 등 제공으로 낙상예방 도모
4	스 마 트 돌 봄	1.6억 원	비 대 면 돌 봄 욕구 노인 등	어르신말동무돌봄로봇 제공
5	퇴 원 환 자 돌 봄	0.3억 원	2,3차병원 퇴원환자	케어플래 수립을 통한 방문재활, 영양식지원, 심리상담 등 제공
6	경증치매어르신돌봄	0.2억 원	경 증 치 매 노 인	ICT를 활용한 인지기능 강화 프로그램 제공
7	보훈대상자 등 방문 진료 사업비 지원	0.3억 원	보 훈 대 상 자, 수 급 자 등	방 문 진 료 시 발 생 하 는 본인 부담금 지원 등

- 제공절차 :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및 상담을 통한 서비스 연계·제공

기대효과

- 돌봄대상의 사회적 입원 감소와 지역사회 정주성 향상
- 인구 고령화 및 가족 구조 변화(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돌봄 욕구 해소 기여



문의 | 복지정책과 042-608-4612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확대」

(시행일 2024년 1월)

□ 무엇이 달라지나요?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권역 및 수행기관 확대로 촘촘한 사회안전망 강화

종 전		
• 권역 및 수행기관 3개소		
권역	수행기관	사업량(명)
계		3,529
1권역 (오정·회덕)	대덕구노인 종합복지관	1619
2권역 (비래·송촌)	법동종합 사회복지관	1270
3권역 (대화·법2)	대덕종합 사회복지관	640



변 경		
• 권역 및 수행기관 5개소 확대		
권역	수행기관	사업량(명)
계		4,100
1권역 (오정·회덕)	대덕구노인 종합복지관	1,094
2권역 (송촌·대화)	대덕사랑 노인복지센터	706
3권역 (비래·법2)	법동종합 사회복지관	814
4권역 (중리·법1)	중리종합 사회복지관	778
5권역 (신탄진·석봉· 덕암·목상)	대덕종합 사회복지관	658

사업개요

- 대 상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중 요보호 노인
- 사 업 량 : 대상자 4,100명, 전담사회복지사 19명, 생활지원사 272명
- 사업내용 :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생활지원사를 통해 욕구별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 사 업 비 : 5,996백만 원(균특 70%, 시비 30%)

기대효과

-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의 촘촘한 사회안전망 강화



문의 | 노인장애인과 042-608-6773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금액 인상」

(시행일 2024년 1월)

□ 무엇이 달라지나요?

- ▷ 2024년도부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금액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지원금액 인상

종 전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100만원 지원



변 경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120만원 지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여성장애인 중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및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지원내용 : 120만원 현금 지원(1회)
- 지급방법 :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 또는 서비스 개별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①신분증 ②신청서 ③통장사본 ④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기대효과

- 비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 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문의 | 노인장애인과 042-608-6805

「대덕구 가족센터 운영 및 설치 이전」

(시행일 2024년 1월)

□ 새롭게 생겼어요!

- ▷ ‘舊대덕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대덕구 가족센터’로 가족지원 업무를 통합·운영
- ▷ 다문화가족에서 일반가족으로 대상자를 확대하여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 무엇이 달라지나요?

구 분	종 전	변 경
시설명칭	대덕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대덕구 가족센터 • 가족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 일반, 다문화, 한부모·조부모, 맞벌이 등
사업대상	다문화가족 대상 가족지원사업	

사업개요

-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63, 2층 / 舊 대덕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24. 상반기(신탄진동 773 일원) 가족센터 준공 후 이전 개소 예정
- 주요시설 : 사무실, 상담실(면접·전화·집단), 교육실, 교류·소통 공간 등
- 지원대상 : 모든 가족 (일반, 다문화, 맞벌이, 한부모·조부모 등)
- 사업내용 : 가족관련 교육, 상담, 정보제공, 자조모임, 문화프로그램 등 운영
- 운영시간 : 09:00~18:00 / 공·휴일 휴관
※ 야간 및 주말 운영은 수요 및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

기대효과

- 다문화·비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다양한 참여자의 진입 장벽 개선 및 다양한 가족친화사업 강화



문의 | 가족친화과 042-608-6784

「첫만남 이용권 지원 강화」

(시행일 2024년 1월)

□ ‘첫만남 이용권’이란?

- ▷ 출생아로 출생 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바우처)을 출생순위(첫째, 둘째 이상)에 따라 각 200만원, 300만원을 1회 지급

□ 무엇이 달라지나요?

종 전	변 경
• 모든 자녀 각 200만원 지원 ※ ‘22년 첫만남이용권 신규 도입	• 첫째 : 200만원 • 둘째 이상 : 300만원

사업개요

- 시 행 일 : 2024. 1. ~
- 지원대상 : 출생 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바우처 1회 지급)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신청방법

-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 가능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문의 | 가족친화과 042-608-6784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 지원 강화」

(시행일 2024년 1월)

□ 제도 강화 배경은?

- ▷ 다문화 가족은 일반가구 대비 소득수준이 낮고, 다문화 자녀의 학습 역량도 일반가구와 상당한 격차 발생

□ 무엇이 달라지나요?

종 전	변 경
- 기초학습지원 대상 - 취학 전후 자녀(초등 저학년)	(확대) 대상자: 초등학교 자녀 전체 (신설)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개요 1

- 사 업 명 : 기초학습지원(확대)
- 지원대상 : 다문화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자녀
- 지원내용 : 아동의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해 기본적인 기초학습지원
※ 기본 한국어 교육 및 초등고학년 대상 국어 및 독서토론 등 수업 지원

사업개요 2

- 사 업 명 : 교육활동비 지원(신설)
- 지원대상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가구의 7세~18세 다문화 자녀
- 지원내용 : 저소득 다문화 자녀에게 학습지원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 구입, 독서실이용, 온라인학습권 구매 등 비용 지원
※ (초등) 연 400천원, (중등) 연 500천원, (고등) 연 600천원
- 문 의 처 : 대덕구 가족센터 / ☎ 042) 639-2664



문의 | 가족친화과 042-608-6784, 대덕구 가족센터 042-639-2664

「아동발달지원제좌(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자 확대」

(시행일 2024년 1월)

□ 제도개편 사유는?

-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신규가입 자격을 확대하여(나이, 소득)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초기비용을 위한 자산형성을 적극적·장기적 지원

□ 무엇이 달라지나요?

종 전	변 경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신규가입 자격 - 나이 : 12~17세 - 소득 : 생계·의료급여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신규가입 자격 - 나이 : 0 ~ 17세 - 소득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및 시설보호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등)
- 지원금액 : 적립금에 대해 1:2 정부지원금 매칭(월 최대 10만원 내 지원)
- 신청방법 : 수시신청
 - (방 문)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출생 신고 시)
 -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 구비서류 : 신분증(보호자)



기대효과

- 미래성장 동력인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로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 육성



문의 | 가족친화과 042-608-6567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금 확대」

(시행일 2024년 1월)

□ ‘자립수당’이란?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 종료 후 경제적 부담 완화와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아동복지법 제52조)

□ 무엇이 달라지나요?

종 전	변 경
• 자립준비청년에게 매월 40만원 지급	• 자립준비청년에게 매월 50만원 지급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 보호 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 보호를 받고 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자
 - 지원금액 : 매월 50만원 / 보호종료일로부터 최대 60개월
 - 지급일 : 매월 20일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소득산정에 미산정
 - 신청방법 : 수시 신청
 - (방 문)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 (우편 및 팩스)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 * 해외 유학(재학증명서), 군 입대(군 입영사실확인서), 질병(입원확인서 등)
- 구비서류 : 신분증, 서민금융진흥원 사이버강의 이수증 또는 국민연금공단 종합재무상담 확인서 중 택 1



문의 | 가족친화과 042-608-6566

「부모급여 확대 지원」

(시행일 2024년 1월)

□ ‘부모급여’란?

- ▷ 2세 미만 아동(0~23개월)의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월 단위 보편수당

□ 무엇이 달라지나요?

종 전	변 경
• 0세 : 월 70만원 • 1세 : 월 35만원	• 0세 : 월 100만원 • 1세 : 월 50만원

사업개요

- 시 행 일 : 2024. 1. ~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으로서 2세 미만의 아동(0 ~ 23개월)
- 신청기간 :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신청방법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및 복지로 웹사이트 (<http://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



문의 | 가족친화과 042-608-6972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확대 지원」

(시행일 2024년 1월)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란?

▷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법정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자녀 양육비 지원,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

□ 무엇이 달라지나요?

종 전	변 경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지급대상 : 18세 미만 자녀 • 지급액 : 월 20만원(아동양육비)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지급대상 : 고등학생 자녀 • 지 급 액 : 월 21만원(아동양육비)

사업개요

- 시 행 일 : 2024. 1. ~
- 지원대상 :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
- 신청기간 : 수시
- 구분
 - 아동양육비 :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자녀당 월 21만원 지원
 - 추가아동양육비 : 청년한부모(25~34세)의 자녀당 월 5~10만원 추가 지원
 - 학용품비 :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중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연 93천원 지원



문의 | 가족친화과 042-608-6783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금액 확대」

(시행일 2024년 1월)

□ 스포츠강좌이용권이란?

▷ 저소득층 유·청소년 및 등록장애인에게 스포츠참여기회 제공으로
평등한 스포츠 참여, 건강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

□ 무엇이 달라지나요?

종 전	변 경
• 23년 : 9만5천원 (12개월 기준)	• 스포츠강좌이용권 : 10만원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 11만원

지원대상

■ 스포츠강좌이용권

: 5세~18세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범죄피해가구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 5세~69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지원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및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신청

■ 주민등록상 관할 구청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서면) 신청가능



문의 | 문화관광체육과 042-608-6593

「대덕구 로컬푸드 직매장 개소」

(시행일 2024년 5월)

□ ‘로컬푸드 직매장’이란?

- ▷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생산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와 소득을, 소비자에게는 먹거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여 지역 내 자원의 선순환구조 및 먹거리 주권의 확립을 목적으로 함.

사업내용

- 시 설 명 : 대덕구 로컬푸드 직매장
- 위 치 : 신탄진권역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1층(석봉동 774번지)
- 규 모 : 260㎡ / 직매장 200㎡, 공동작업장 및 사무실 60㎡
- 운영방식 : 민간위탁 운영
- 개소예정일 : 2024년 5월

□ ‘로컬푸드’가 좋은 이유!



신선하다!
보통 유통기간이 5~6일인 일반 농산물에 비해 로컬푸드 농산물은 하루 이내에 유통되기 때문에 훨씬 더 신선하고 그래서 맛도 영양도 좋습니다.



환경을 보호한다!
가까운 곳에서 생산되어 푸드마일리지*가 줄어들고 단일품종을 많이 심는 글로벌푸드에 비해 다양한 품종, 토종 품종을 심어 생태계 유지 및 환경을 보호한다.



서로 이익이 된다!
소비자는 가격이 싸서 좋고 농부는 유통비가 싸서 수익이 느니까 좋습니다.



식량주권을 지킨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율은 23.1%로 76.9%를 수입에 의존합니다. 먹거리를 수입에 의존하면 식량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인 식량주권에 위협이 됩니다. 로컬푸드는 식량주권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믿을 수 있다!
로컬푸드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생산하여 나에게 왔는지를 알 수 있는 ‘얼굴있는 먹거리’이기에 믿고 먹을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살아난다!
글로벌 푸드를 이용하면 우리 지역의 돈이 외부로 빠져 나가게 되지만, 로컬푸드를 이용하면 지역 유통업체와 농민들에게 돈이 돌아가게 되어 지역에 돈이 머무르게 됩니다.



문의 | 에너지산업과 042-608-6945

「대덕구 공영주차장 신규 조성」

(시행일 2024년 6월)

□ 공영주차장 신규 조성

▷ 주차난 해소 및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를 위한 공영주차장 신규 조성

□ 새롭게 생겨요!

주요 사항

- 읍내동 362-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27면)
- 비래동 410-3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34면)
- 비래동 409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15면)

알아두면 좋아요

- 운영기간 : 2024. 06. ~
- 위 치
 1. 읍내동 362-2번지 일원(대덕문화원 인근)
 2. 비래동 410-3번지 일원(비래사 입구)
 3. 비래동 409번지 일원(비래동 고인돌)
- 운영시간 : 24시간 상시 운영
- 이 용 료 : 무료

기대효과

- 읍내동 및 비래동 거주민 및 인근 이용객 주차 편의 제공
- 쾌적한 주차장 이용환경 조성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 기여



문의 | 교통과 042-608-5292

「대덕구 노상주차장 확대 지정 운영」

(시행일 2024년 1월)

□ 노상주차장 확대 지정

- ▷ 어린이보호구역 축소 지정 구간을 노상주차장으로 조성하여 대덕구 공영주차장 확대 운영

□ 새롭게 생겨요!

주요 사항

- 우암로486번길 일원 노상주차장 신규 지정 (0면 → 16면)
- 우암동로 일원 노상주차장 확대 지정 (23면 → 40면)

알아두면 좋아요

- 운영기간 : 2024. 01. ~
- 위 치 : 대덕구 우암로486번길, 우암동로 일원
- 운영시간 : 20:00 ~ 07:00 (시간제 주차)
- 이 용 료 : 무료

기대효과

- 비래동 인근 거주민 및 인근 상권 이용객 주차 편의 제공
- 쾌적한 주차장 이용환경 조성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 기여



문의 | 교통과 042-608-5294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시행」

(시행예정 2024년 1월)

□ 새롭게 생겨요!

- ▷ 관내 소규모 노후(30년 이상) 건축물 무료 점검
- ▷ 점검 후 보수·보강 비용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 「건축물 관리법」 시행(2023.4.)

사업개요

■ 대 상 : 관내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민간 건축물

※ 단 다음 건축물은 제외

1. 「건축물 관리법」 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5.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

■ 절 차 : 점검대상 건축물 선정(區 예산에 따라 제한적 선정)

점검대상 건축물 선정 통보(區→관리자)

점검결과 제공 후 개선방안 제시

보수·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선정대상 : 구조적 결함이 큰 순서대로 임의선정

■ 주 관 : 대덕구

기대효과

- 관내 노후 건축물(2022 기준 52.2%) 붕괴 예방을 통한 구민 생명보호
- 건축물 개량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문의 | 건축과 042-608-53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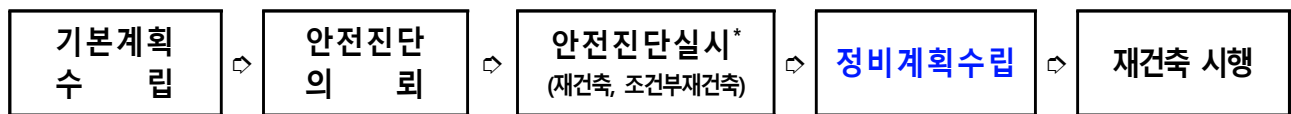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시행」

(시행일 2024년 상반기)

□ ‘정비계획수립’이란?

▷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으로 결정된 재건축예정부지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거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수립

□ 정비계획수립 절차



※ 2023년 하반기 안전진단 완료 / ‘조건부 재건축’ 판정

* 조건부 재건축이란? 지자체 재량사항으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시행할 수 있으며 재건축 가능함을 말함

용역개요

■ 용역대상 : 대덕구 정비예정구역 4개소

연번	구역명	위 치	면적(㎡)	연면적(㎡)	동·세대수	준공년도
1	연축주공	연축동 102	43,383	32,122	18개동, 670세대	1987
2	신대주공	신대동 179	32,772	25,815	13개동, 540세대	1987
3	중리주공2	법동 284-1	47,368	79,184	11개동, 1,220세대	1987
4	소라	대화동 30-1	13,331	19,650	5개동, 270세대	1990

■ 용역기간 : 2024. ~ 2025.

기대효과

■ 노후되고 파손된 아파트의 거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민의 추진의지가 담긴 재건축과 신축아파트 공급으로 생활 인프라 조성



문의 | 건축과 042-608-5382

「산불소화시설 설치 사업」

(시행일 2024년 1~6월)

□ ‘산불소화시설’ 이란?

- ▷ 날이 건조할 때 미리 물을 분사하여 산불의 발생 위험을 낮추고, 유사 시 산불의 확산 저지 및 직접 진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보호대상 시설물 주변에 설치하는 수관수막설비, 산불진화용 급수전 및 기계실 등 그 부대시설 일체

□ 무엇이 달라지나요?

중 전
• 중요 시설(문화재 등) 거점형 소화시설 전무



변 경
• 중요 시설(문화재 등) 산불소화시설 설치를 통한 산불 시 인명·재산 보호

사업개요

- 기 간 : 2024. 1. ~ 6.
- 사업규모 : 산불소화시설 설치 1개소
- 사업위치 : 대덕구 내 문화재 등 집중 예방 필요 지역(용화사 석불입상 등)

□ 사례 사진



문의 | 공원녹지과 042-608-5163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수수료 및 내용 변경」

(시행일 2024년 11월 23일)

□ 무엇이 달라지나요?

종 전	변 경
• 수수료: 3,000원 • 검사항목: 전염성 피부질환 • 검진기준일: 매년 검진일	• 수수료: 미정(협의 중) • 검사항목: 파라티푸스 보균검사 • 검진기준일: 전년도 검진일 경과 후 1개월 이내

알아두면 좋아요

■ 변경근거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3. 11. 22.> [시행일: 2024. 11. 23.]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안(공고 제2023-382호)

구분	현행	개선	비고
검사항목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폐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건강진단 항목 개선 (안 제2조제1항)
검진기준일	매년 검진일(당일)	전년도 검진일 경과 후 1개월 이내	검진기준일 완화 (안 제2조제5항)

- 추진계획: 대전시 5개구 수수료 협의 후 2024년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개정 후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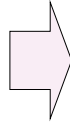
문의 | 보건행정과 042-608-5493, 5495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확대」

(시행일 2024년 1월)

□ 무엇이 달라지나요?

< 종 전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난임부부 - (연령차등) 연령별 차등지원 기준				
적용대상(여성)			44세 이하	44세 초과
체외 수정	신선	1~9회	110	90
	동결	1~7회	50	40
인공수정		1~5회	30	20



< 변 경 >				
· 대전형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 (지원대상) 모든 난임부부 - (연령차등) 연령별 차등지원 기준 폐지				
적용대상(여성)			1회당 최대지원금	
체외 수정	신선	1~9회	110	
	동결	1~7회	50	
인공수정		1~5회	30	

사업개요

대전형 난임부부 확대 지원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 및 45세 이상 여성
 - 소득기준 폐지: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도 시술비 지원
 - 연령차등 폐지: 최대 지원액을 연령차등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
- **지원내용:** 건강보험적용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현금지원
 - 최대 체외수정(신선, 동결) 16회까지, 인공수정 5회 30만원까지 지원
 -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포함
- **신청방법:** 온라인(정부24, e보건소) 또는 주소지 보건소 방문 신청

기대효과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 폐지와 연령차등 조건 폐지로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



문의 | 건강정책과 042-608-5489

「난임부부 지원(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행일 2024년 4월)

□ 새롭게 생겨요!

- ▷ 냉동난자를 사용하여 임신하고자 하는 부부의 냉동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 (2024년부터 신규 지원)

사업개요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신설

- 지원대상: 난임 진단(1년 기간 필요) 전이라도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을 원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내용: 냉동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 지원
 - 부부당 100만원/회 한도 내, 최대 2회 200만원까지 지원
-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 방문 신청

기대효과

-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향상에 기여



문의 | 건강정책과 042-608-5489

「영유아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시행일 2024년 1월)

□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배경은?

▷ 미숙아·선천성이상아·선천성난청 환아의 의료비 및 검사비 지원의 소득기준 폐지(지원 대상 가정 확대)로 경제적 부담 경감 도모

□ 무엇이 달라지나요?

구 분	종 전	변 경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원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진단수술받은 경우에만 지원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원 ✓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기한 1년 4개월 → 2년으로 확대

사업개요

■ 지원내용: 소득기준 폐지 및 지원기한 확대

사 업 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 또는 체중 2,500그램 미만 출생아	출생 시 체중별 의료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1인당 최고 300만원~1,000만원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환아 (식도 폐쇄·협착, 장폐색증 등)	의료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검사비: 출생 후 28일 이내 실시한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	선별검사비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확진 검사 시, 확진 검사비 본인 부담금 지원 (7만원 한도)
	보청기 지원: 난청 선별확진 검사 결과 확진 받은 3세 미만 영유아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 신청방법: 온라인(e보건소) 또는 주소지 보건소 방문 신청



문의 | 건강정책과 042-608-5489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시행일 2024년 1월)

□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배경은?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으로 건강한 출생 및 산모 건강증진 도모

□ 무엇이 달라지나요?

구 분	종 전	변 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 후 입원치료 받은 자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원 -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 후 입원치료 받은 자

사업개요

- **지원대상:** 고위험 임신 질환(19종)으로 진단 후 입원 치료받은 자
※ 19종: 조기진통, 양막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자궁경부무력증 등
- **지원내용:** 건강보험적용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현금지원
· 최대 300만원까지 진료비의 90%까지 지원
- **신청방법:** 온라인(e보건소) 또는 주소지 보건소 방문 신청

기대효과

- 고위험 임신질환자의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출산 도모



문의 | 건강정책과 042-608-548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시행일 2024년 1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배경은?

▷ 돌봄 난이도가 높은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로 다둥이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행복한 육아 지원

□ 무엇이 달라지나요?

구 분	종 전	
	지원인력	지원기간
신생아 1명	1명	(첫째아) 5~15일 (둘째아 이상) 10~20일
신생아 2명 (쌍둥이)	2명	10~20일
신생아 3명 (세쌍둥이)	2명	15~25일

⇒

변 경	
지원인력	지원기간
좌 동	
좌 동	
태아 수에 맞춰 증원 *세쌍둥이 3명, 네쌍둥이 4명 등 지원인원 2명 유지 시 수당 인상 지원	세쌍둥이 이상 지원일수 확대 *(기존) 15~25일 → (개선) 15~40일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생가정
- 지원내용(세쌍둥이 이상)
 - 인력증원: 태아 수에 맞춰 제공인력 증원하여 지원하거나, 이용자 의사에 따라 2명 유지 시 태아 수에 따라 인상률 차등 적용
 - 지원기간: 세쌍둥이 이상 지원기간 확대(최대 25일 → 40일)
- 신청방법: 온라인(복지로) 또는 주소지 보건소 방문 신청



문의 | 건강정책과 042-608-54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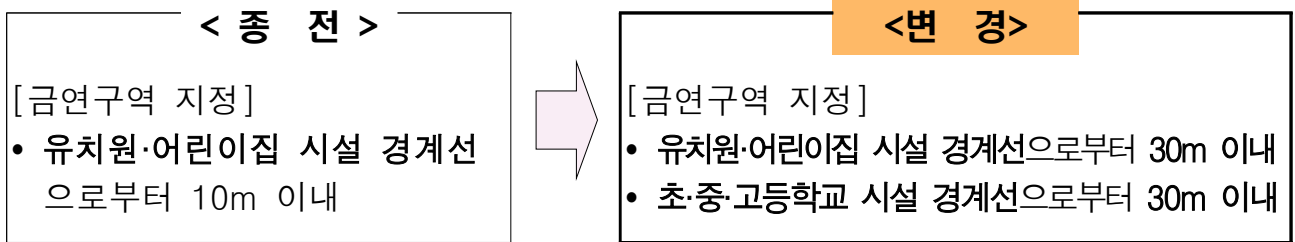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확대」

(시행일 2024년 8월17일)

▷ 어린이와 청소년의 간접흡연을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및 초·중·고등학교 주변 금연구역이 확대됩니다.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 공포(2023. 8. 16.), 시행(2024. 8. 17.) / 보건복지부

□ 무엇이 달라지나요?



개 요

■ 개정내용

- (확대)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 30m 이내
- (신설)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 과 태 료: 해당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교육 또는 금연 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음

■ 주 관: 보건복지부, 대전광역시, 자치구 보건소

기대효과

- 어린이와 청소년들에 대해 간접흡연을 유발하는 건강 위해행위를 방지하고, 흡연을 모방하지 않도록 규제하여 국민 건강증진 도모



문의 | 건강정책과 042-608-5476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시행일 2024년 1월27일)

▷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 27일부터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구분없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은 모두 적용

* 「중대재해처벌법」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시행(2024. 1. 27.)

주요내용

■ 중대재해처벌법이란?

- 사업장의 안전 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 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 재해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 목적
- 사업주 등이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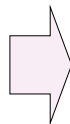
■ 중대산업재해란?

중대산업재해 요건	처벌 규정
사망자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 50억 이하 벌금(양벌규정)
동일사고 6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10억원 이하 벌금(양벌규정)
동일 유해 요인 질병자 1년 이내 이상	

□ 무엇이 달라지나요?

< 종 전 [2022.1.27.~] >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 적용



< 변 경 [2024.1.27.~] >

- 상시근로자 5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 미만) 사업장 확대 시행



문의 | 안전총괄과 042-608-4352